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5. 10. 22.(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5. 10. 13.
- 회부일 : 2025. 10. 13. (의안번호 : 25-128)

2. 제안이유

-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사무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총 33개 사무)

- 「약사법」 제21조의3 신설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사무(1건)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신설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1건)
- 「약사법」 제46조의2 신설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10건)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신설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9건)

○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법령 개정된 사무(12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무위임 규칙 → 사무위임 조례 이관(11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무위임 규칙 → 사무위임 조례 이관(1건)

나.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총 19개 사무)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처리 사무 삭제(1건)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삭제에 따른 의료급여증 회수 사무 삭제

○ 근거법령 삭제 및 정비(15건)

- 「의료법 시행규칙」 제80조 삭제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삭제(2건)

- 「약사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변경(2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무 이관으로 사무 순서 변경(2건)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신규 사무로 인한 사무 순서 변경(9건)

○ 관계 법령과 용어 통일(3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용어 정비
(1건, 시체매장·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 →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2건, 농지원부 → 농지대장)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5.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사무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Ⅰ 주요 개정내용

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총 33개 사무)

- 「약사법」 제21조의3 신설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사무(1건)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신설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1건)
- 「약사법」 제46조의2 신설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10건)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신설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9건)
-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법령 개정된 사무(12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무위임 규칙 → 사무위임 조례 이관(11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무위임 규칙 → 사무위임 조례 이관(1건)

나.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총 19개 사무)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처리 사무 삭제(1건)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삭제에 따른 의료급여증 회수 사무 삭제

○ 근거법령 삭제 및 정비(15건)

- 「의료법 시행규칙」 제80조 삭제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 처리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삭제(2건)
- 「약사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변경(2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무 이관으로 사무 순서 변경(2건)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신규 사무로 인한 사무 순서 변경(9건)

○ 관계 법령과 용어 통일(3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용어 정비
(1건, 시체매장·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 →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2건, 농지원부 → 농지대장)

②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

- 위임사무의 신설을 통해 보건, 의약, 의료기기, 마약류 등 주민 건강 및 안전 관련 사무의 관리 권한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행정 대응 가능
- 사무 정비를 통해 중복, 불필요한 행정 사무를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제고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도록 위임사무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제정), 제28조(사무의 위임) 및 개별법의 위임 조항에 따라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설된 위임사무 중 다수는 새로운 민원 대응, 보고, 관리 업무를 수반하므로, 관련 부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비 대상 중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 등은 대민 서비스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한 운영상 보완사항은 향후 시행규칙 통해 정비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